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6. 11 선고 2020가단8044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육삼신, 심정훈, 조세형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지

담당변호사 문대근

변 론 종 결 2021. 4. 30.

판 결 선 고 2021. 6. 11.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0. 3. 16.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 가.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20. 3. 25. 접수 제465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 나.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20. 3. 25. 접수 제415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84823호로 구상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0. 7. 29. 지급명령을 하였고, 이는 2010. 8. 19. 확정되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C은 원고에게 28,723,160원 및 그중 16,494,842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C의 아버지인 D의 소유였다. 그런데 D가 2019. 10. 4. 사망하였고(이하 D를 '망인'이라 한다), 그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C, E, F가 있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C의 법정상속지분은 2/9이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0. 3.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C, E, F는 상속받지 않기로 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20. 3. 25. 피고 명의로 2019. 10. 4.자(망인의 사망일)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C은 위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상속재산 협의분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지분 외에 다른 재산은 없었던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C의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0. 3. 16.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20. 3. 25. 접수 제465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와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20. 3. 25. 접수 제415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C은 피고에 대한 93,900,000원의 차용금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자신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C이 피고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C이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 대물변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알지 못하고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이고,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2020.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227701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4. 28.자 지급명령이 2020. 5. 6. C에게 송달되고 같은 해 5. 2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4) 피고는, 가사 C의 상속지분 양도가 사해행위가 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와 망인의 공동재산이므로 피고 소유의 1/2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망인 소유의 1/2 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인이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망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매수 자금의 마련 방법, 위 각 부동산 소유권 취득 전후의 피고의 구체적인 기여 등 부부공동재산임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정연희

별지

목 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고양시 일산동구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고양시 일산동구

철근콘크리트벽식조 슬래브지붕 18층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고양시 일산동구 대 31852.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6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71.37㎡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31852.2분의 51.661

2. 남양주시 입야 11833㎡. 끝.